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025. 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11일, 박지원의원 등 58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11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년 12월 13일)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년 4월 29일)

상정 · 심사 · 수정의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년 6월 23일)

상정 · 소위 심사보고 ·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지원 의원)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 당시 농어민들의 거센 반대가 있었음. 이에 대해 당시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에서는 비준 시 매년 1000억 원씩 10년, 1조 원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만들어서 FTA로 얻은 이익 일부를 농어촌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공적인 약속을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 운영하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조성 규모는 2024년 5월 현재 동 재단에서 운영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액 약 2조 6천억 원 대비 턱없이 부족한 약 2,345억 원에 불과한 상황임.

기금모금도 공공기관 중심이며, 그 방식 또한 적립형이 아닌 기업 지정 사업으로 그때그때 소진하는 형편인 바, 중소기업벤처부 산하에 있는 재단의 특성상,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에 비해 모금 유인도 거의 없다시피한 상황임.

이에 대한민국 국회가 향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애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에 적극적인 법적, 제도적 지원 추진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다짐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 검토의견

가. 농어촌 상생기금 개요

- 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15 여야정 합의’에 따라 무역이득공유제¹⁾의 대안으로 도입된 기금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그 개요는 다음과 같음.

1)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해 수혜를 받는 기업의 이익 일부를 환수, 농어업 등 피해산업을 지원하자는 제도.

【 상생기금 개요 】

- (추진배경) 한·중 FTA 비준 동의 시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여야정 합의('15.11.30)에 의해 도입('17.3.30)
- (조성목표)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현물 등으로 매년 1천억원 조성, 10년간 1조원 조성 목표
- (조성재원 및 용도)

기금의 조성 재원	기금의 용도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1.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2. 의료서비스의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등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3. 정주 여건의 개선, 경관 개선 등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4. 농수산물 생산, 유통, 판매 등의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어 업인 간 공동협력사업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 하는 상품권 사업

- (운영조직)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위원회와 운영본부('17.3.30. 출범)
- (인센티브) 세제혜택(법인세액 공제 등), 동반성장지수·평가 반영, 홍보
- (조성현황) '17년~'24.10월 현재까지 상생기금 출연액 중 공기업·공공기관
의 출연액은 60.6%, 민간기업의 출연액은 39.1% 차지
- (기금사업 집행현황): 926개 사업, 2,085.5억원
 - 농어촌 교육·장학사업(96개 사업, 10,823백만원)
 -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208개 사업, 37,151,백만원)
 -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419개 사업, 102,663백만원)
 -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공동협력사업(193개 사업, 41,238백만원)
 - 농협 발행 상품권 사업(9개 사업, 16,653백만원)
 - 홍보·공동사업 운용관리(1개 사업, 20백만원)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2024.12.6. 제출)

나.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 상생기금 설립 이후 2024년 10월까지 조성된 기금 현황은 2,497 억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을 조성하여 10년간 1조원을 조성할 것을 목표로 하였음을 감안할 때 8년간(2017~2024) 총 조성목표액의 약 25%만 조성된 상태임.
- 전체 조성액 중 60.6%는 공공기관, 39.1%는 민간기업, 0.3%는 개인 및 단체가 출연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참여율에 비하여 민간기업의 참여율은 낮은 편임.

【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 】

(단위: 백만원, 개 / '24.10.31.기준)

구 분	공공기관		민간기업		개인 및 단체		합 계
	참여	금액	참여	금액	참여	금액	
2017	14	30,625,000 (98.9%)	2	300,900 (1.0%)	68	38,600 (0.1%)	30,964,500 (100.0%)
2018	30	17,930,304 (77.4%)	9	5,215,000 (22.5%)	27	13,500 (0.1%)	23,158,804 (100.0%)
2019	43	17,543,314 (77.6%)	26	5,045,190 (22.3%)	9	5,000 (0.1%)	22,593,504 (100.0%)
2020	65	20,434,868 (54.4%)	76	17,053,056 (45.3%)	16	107,411 (0.3%)	37,595,335 (100.0%)
2021	94	25,738,841 (56.5%)	70	19,683,671 (43.2%)	5	102,607 (0.3%)	45,525,119 (100.0%)
2022	102	16,398,470 (46.3%)	111	18,791,962 (53.1%)	7	226,200 (0.6%)	35,416,632 (100.0%)
2023	117	13,387,204 (43.9%)	103	16,941,254 (55.6%)	5	166,717 (0.5%)	30,495,175 (100.0%)
2024.10	89	9,097,910 (45.6%)	66	10,765,696 (54.0%)	8	80,500 (0.4%)	19,944,106 (100.0%)
다년협약 잔여분	2	270,000 (6.7%)	2	3,780,000 (93.3%)	-	- (0.0%)	4,050,000 (100.0%)
총 계 (중복제외)	556 (134)	151,425,911	465 (211)	97,576,729	145 (133)	740,535	249,743,175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2024.12.6. 제출)

□ 한편, 상생기금 사업으로는 농어촌지역 개발 및 활성화 관련 419개 사업에 1,027을 집행(49.2%)하고,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간 공동협력 관련 193개 사업에 412억원을 집행(19.8%)하는 등 누적 926개 사업에 2,086억원을 집행하였음.

【연도별 사업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개 / '24.10.31.기준)

구 분	년 도	교육·장학 (제1호)	복지증진 (제2호)	지역개발 (제3호)	공동협력 (제4호)	상품권 (제5호)	운영·관리 (제6호)	합 계
지 원 금 액	2017	500	192	344	501	-	-	1,537
	2018	1,237	4,003	16,688	8,459	3	-	30,389
	2019	1,292	2,921	10,014	3,360	359	-	17,947
	2020	384	5,187	14,805	5,325	1,811	-	27,512
	2021	1,644	6,227	12,621	4,646	3,807	-	28,945
	2022	554	5,464	15,440	5,661	4,211	-	31,330
	2023	4,265	6,027	15,375	8,562	3,252	20	37,501
	2024.10	948	7,130	17,376	4,725	3,210	-	33,389
	합 계	10,824 (5.2%)	37,151 (17.8%)	102,663 (49.2%)	41,239 (19.8%)	16,653 (8.0%)	20 (0.0%)	208,550 (100.0%)
지 원 과 제	2017	2	2	3	2	-	-	9
	2018	8	11	29	19	1	-	68
	2019	12	21	36	16	2	-	87
	2020	10	28	58	28	1	-	125
	2021	15	31	76	33	2	-	157
	2022	13	30	65	32	1	-	141
	2023	22	46	63	41	1	1	174
	2024.10	14	39	89	22	1	-	165
	합 계	96 (10.4%)	208 (22.5%)	419 (45.2%)	193 (20.8%)	9 (1.1%)	1 (0.1%)	926 (100.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2024.12.6. 제출)

- 아울러, 상생기금의 운용형태를 살펴보면, 지정기금이 2,454.6억, 비지정기금은 42.9억으로 전체 기금 2,497.4억 중에서 지정기금이 98.3%를 차지하고 있어 체계적인 사업추진도 어려운 측면이 있음.

【연도별 지정/비지정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정기금 (%)	30,815,900 (99.5)	23,079,304 (99.7)	22,537,304 (99.8)	37,481,634 (99.7)	45,426,593 (99.8)
비지정기금 (%)	148,600 (0.5)	79,500 (0.3)	56,200 (0.2)	113,701 (0.3)	98,526 (0.2)
계	30,964,500	23,158,804	22,593,504	37,595,335	45,525,119

구 분	2022	2023	2024.10	다년잔액	합 계
지정기금 (%)	34,860,750 (98.4)	28,488,246 (93.4)	18,715,740 (93.8)	4,050,000 (100.0)	245,455,471 (98.3)
비지정기금 (%)	555,882 (1.6)	2,006,929 (6.6)	1,228,366 (6.2)	- -	4,287,704 (1.7)
계	35,416,632	30,495,175	19,944,106	4,050,000	249,743,175

다. 상생기금 운영주체

- 현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이하 “재단”)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운용 중에 있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개요】

□ 설립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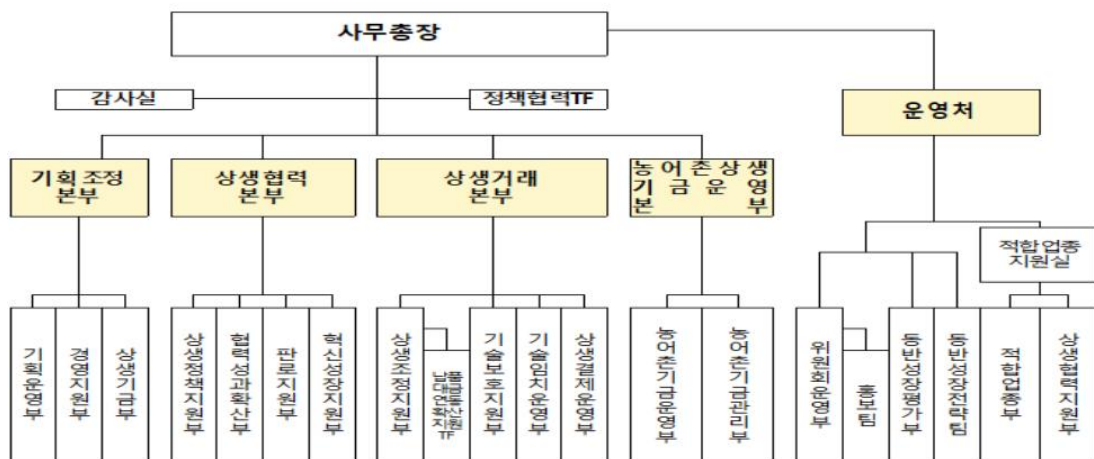
- (협력재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농어업인의 상생협력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상생법 제20조, FTA농어업법 제18조2)

□ 주요업무

- 대·중소기업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 기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운영 및 평가 지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수·위탁거래 공정화 지원
-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및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 조직 및 인원

- 조 직 : 1처 4본부 2실 17부 4팀
- (재단) 4본부 1실 13부 2팀, (동반위) 1처 1실 4부 2팀
- 인 원 : 총 197명



※ 자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2024.12.6. 제출)

□ 제21대 국회 당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서 상생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재단의 업무는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현행 재단의 업무를 별도의 재단으로 이관하는 취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안, 제2103874호)가 발의(2020. 09. 15)된 바 있음.

당시 농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금조성 노하우 보유 및 기업협력사업과의 연계 등의 사유로 현행 체제 유지의견을 낸 바 있음.

라. 관련 법률 개정 추진현황

□ 상생기금에 대한 목표출연액을 달성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어촌·농어업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다음의 법률안이 제22대 국회에 제출되어 각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안, 제2204882호)은 수혜기업의 매출액 0.005% 출연노력의무, 출연목표액에 미달할 경우 일반회계에서의 전입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안, 제2204892호)은 민간기업 등에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모금이 가능한 법률 목록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안, 제2204884호)은 상생기금 출연 시 법인세 공제 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상향하여 민간기업의 출연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려는 것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 개정안 계류현황】

제명	제안자	주요내용	심사진행상태
	제안일		
	의안번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수혜기업에 매년 매출액의 0.005% 이상 출연 노력 의무 부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액이 목표액 보다 부족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전입 ·수혜기업별 출연 할당액을 정해 출연을 요청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5.1.1부터 20년간 매년 1천억원 조성	위원회 회부 (‘24.10.25.) 농해수위
	‘24.10.24		
	220488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민간기업 등에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독려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적용 예외 법률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	위원회 회부 (‘24.10.25.) 행안위
	‘24.10.24		
	22048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상생기금 출연 시 법인세 공제 비율상향 (10%→50%) ·일몰기간 연장(2025.12.31.→2030.12.31.)	법안소위상정 (‘24.11.22.) 기재위
	‘24.10.24		
	2204884		

마.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의견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기본 원칙, 운영 주체 및 방식 등의 체계는 오랜 논의 끝에 '15.11.30 여야정이 합의함에 따라 결정된 바 있음.
-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원칙 하에서 기금 조성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개선, 공공기관·민간기업 동반성장평가 배점 부여 등 인센티브 개선 및 홍보 강화, 농어촌 ESG 실천제도 운영 등 기업과 농어업·농어촌 간 상생협력체계 구축 등 다각적으로 노력 중임.
- 단기간(3개월 이내) 시일을 정해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도입 당시와 같이 국회를 중심으로 여야정이 공동으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바. 결의안 취지

- 결의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촉구하고 있음.

주문1은 대한민국 정부는 향후 기금 모금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 운용 주체 및 운용방식, 기금 관련 정부 소관부처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 및 이를 위한 관련 법 정비 등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3개월 안에 국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하는 것임.

주문2는 대한민국 정부가 민간기업의 기금 모금 동참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임.

주문3은 대한민국 국회는 기금의 취지에 걸맞는 규모의 모금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제 정당 간 시급히 소통함은 물론, 정부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다짐하는 것임.

- 종합하면, 결의안은 현재 상생기금 출연목표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는 상생기금 출연현황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정부가 상생기금 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포함하는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상생기금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을 실질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소위원장 이원택)

동 결의안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의결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 수정안,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
구 결의안」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6.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주문 문구의 명확화 및 시행에 있어서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함.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주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 문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하 “기금”)은 2015년 한중 FTA 비준을 계기로 매년 1000억 원의 상생협력기금을 향후 10년간 민간기업에서 모금하기로 정한 기금이다. 그러나 FTA의 경제적 성과를 농어촌 상생에 사용하겠다는 기금 취지에 무색하게 그 모금실적은 해마다 저조한 상황이다.

한편 농어촌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인구소멸, 지방소멸, 기후변화 등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 상생협력기금 조성 여야정 협의체 합의문에서 명시한 ‘정부의 부족분 충당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금까지 회피해 왔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향후 기금 모금 활성화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개선방안 및 관련 법 정비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향후 기금 모금의 활성화를 위해 전반적인 개선방안 및 이를 위한 관련 법 정비 등에 대해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민간기업의 기금 모금 동참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기금의 취지에 걸맞는 규모의 모금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제 정당 간 시급히 소통함은 물론, 정부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정안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 주 문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하 “기금”)은 2015년 한중 FTA 비준을 계기로 매년 1000억 원의 상생협력기금을 향후 10년간 민간기업에서 모금하기로 정한 기금이다. 그러나 FTA의 경제적 성과를 농어촌 상생에 사용하겠다는 기금 취지에 무색하게 그 모금실적은 해마다 저조한 상황이다. 한편 농어촌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인구소멸, 지방소멸, 기후변화 등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 상생협력기금 조성 여야정 협의체 합의문에서 명시한 ‘정부의 부족분 충당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금까지 회피해 왔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향후 기금 모금 활성화 등을 포함한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 주 문 (좌 동) (좌 동) (좌 동)

원 안	수정안
전반적인 제도개선방안 및 관련 법 정비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향후 기금 모금의 활성화를 위해 <u>기금 운용 주체 및 운용방식, 기금 관련 정부 소관부처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 및 이를 위한 관련 법 정비 등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3개월 안에 국회에 보고한다.</u> 2.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민간기업의 기금 모금 동참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기금의 취지에 걸맞는 규모의 모금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제 정당 간 시급히 소통함은 물론, 정부와도 적극적으로 <u>협의할 것을 다짐한다.</u>	1. ----- ----- <u>전반적인 개선방안 및 이를 위한 관련 법 정비 등에 대해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한다.</u> 2. (좌 동) 3. ----- ----- ----- ----- ----- <u>협의한다.</u>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

주 문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하 “기금”)은 2015년 한중 FTA 비준을 계기로 매년 1000억 원의 상생협력기금을 향후 10년간 민간기업에서 모금하기로 정한 기금이다. 그러나 FTA의 경제적 성과를 농어촌 상생에 사용하겠다는 기금 취지에 무색하게 그 모금실적은 해마다 저조한 상황이다.

한편 농어촌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인구소멸, 지방소멸, 기후변화 등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 상생협력기금 조성 여야정 협의체 합의문에서 명시한 ‘정부의 부족분 충당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금까지 회피해 왔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향후 기금 모금 활성화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개선방안 및 관련 법 정비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향후 기금 모금의 활성화를 위해 전반적인 개선방안 및 이를 위한 관련 법 정비 등에 대해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민간기업의 기금 모금 동참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기금의 취지에 걸맞는 규모의 모금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제 정당 간 시급히 소통함은 물론, 정부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제안이유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 당시 농어민들의 거센 반대가 있었음. 이에 대해 당시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에서는 비준 시 매년 1000억 원씩 10년, 1조 원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만들어서 FTA로 얻은 이익 일부를 농어촌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공적인 약속을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 운영하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조성 규모는 2024년 5월 현재 동 재단에서 운영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액 약 2조 6천억 원 대비 턱없이 부족한 약 2,345억 원에 불과한 상황임.

기금모금도 공공기관 중심이며, 그 방식 또한 적립형이 아닌 기업

지정 사업으로 그때그때 소진하는 형편인 바, 중소기업벤처부 산하에 있는 재단의 특성상,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에 비해 모금 유인도 거의 없다시피한 상황임.

이에 대한민국 국회가 향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애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에 적극적인 법적, 제도적 지원 추진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다짐하고자 함.